

#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91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1. 19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1. 1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1. 26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사유

-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제가 폐지되고,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가. 성실 납세표창자의 자동차 주차시 주차요금 면제

(안 제4조제5호)

나.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방안 조정(안 제7조)

다.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 삭제 및 설치기준 완화(안 제8조제2항)

라.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 및 구조, 설비기준 조항 삭제

(안 제15조 및 안 제16조)

마.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[단순화 21개 종류 → 7개 종류]

(안 별표 5)

바. 과징금 처분조항 삭제(안 제17조)

사. 과태료 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 조항 신설(안 제18조의 2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1993. 7. 20 조례 제1335호로 제정되어 3차례의 개정을 하였으며, 금회 개정사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외 주차장의 설치 신고제가 폐지되고,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따른 보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#### 6. 토 론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

- 1999. 11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